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여성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25일에서 2026년 6월 25일까지로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1명(5급 5명, 6급 4명, 7급 2명)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7급 4명, 8급 2명)으로 환원하며,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원 34명(6급 34명)을 종전의 직급(7급 34명)으로 환원하고, 정원 34명(7급 3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34명)하며,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정원 2명(7급 1명, 연구관 1명)을 3년 연장하고, 퇴직에 따라 결원이 발생된 사무운영서기보를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로 직렬전환하는 한편,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5급 2명)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개식용종식추진단의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7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을 “22”로 하고,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21”을 “119”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

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5”를 “20”으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7”을 “98”로 하며,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8”을 “40”으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7”을 “29”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6”을 “3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35”를 “136”으로, 전산주사 “4”를 “3”으로,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50”을 “149”로, 전산주사보 “2”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2”를 “3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3”을 “12”로 한다.

별표 17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식용종식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	

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6월 25일”을 “2026년 6월 25일”로 하고, 제4조 중 “2024년 6월 25일”을 “2027년 6월 25일”로 하고, “2024년 6월 26일”은 “2027년 6월 26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을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며,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은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2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4명(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7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3명(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명(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으로 본

다.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7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2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4명, 운전서기 1명)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2명(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으로 본다.

⑤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3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으로 본다.

⑥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0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0명(농업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0명, 농업서기 5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0명(농업주사 5명,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명, 농업서기보 5명)으로 본다.

⑦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

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기록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6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명)은 2026년 8월 3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7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6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u> <u>개식용종식추진단의 단장은 과</u> <u>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u> <u>보한다.</u> <u>② 개식용종식추진단 밑에 두는</u> <u>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u> <u>7과 같으며, 정원 중 1명(행정사</u> <u>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u> <u>·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u> <u>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u> <u>전부, 1명(행정사무관 · 식품위</u> <u>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u> <u>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u> <u>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u> <u>또는 공업사무관)은 식품의약품</u> <u>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u> <u>야 한다.</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촌여성정책팀은 <u>2024년 6월 25일까지</u> 존속한다. ② ~ 제3조 (생략)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2명(공업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u>2024년 6월 25일</u>까지 존속하며, <u>2024년 6월 26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1의 공업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4조제1항 (생략) 제4조제2항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에 따른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7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 ----- ----- <u>2026년 6월 25일</u>-----.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 ----- ----- <u>2027년 6월 25일</u> 까지 존속하며, <u>2027년 6월 26일</u> 이후에는-----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4조제1항 (현행과 같음) 제4조제2항 ----- ----- ----- ----- -----
--	--

12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7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4조제3항 (생략)

제4조제4항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39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6명, 전산주사 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4명 및 운전서기 1명)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행정주사·농업

-----, 행정
서기 또는 농업서기 또는 전산
서기 3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4조제3항 (현행과
같음)

[illegible]

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명, 전산주사보 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4조제4항 (생략) 제4조제5항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30명(농업사무관 5명,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0명, 농업서기 5명)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30명(농업주사 5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0명, <u>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6명</u>,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명, 농업서기보 5	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명, 전산주사보 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4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 제4조제4항 (현행과 같음) 제4조제5항 ----- ----- ----- ----- ----- ----- ----- ----- -----, <u>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6명</u>,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명,
---	---

명)으로 본다.

농업서기보 5명)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 · <u>20</u> · ·	· · <u>22</u> · ·	+2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u>121</u> ·	<u>119</u> ·	-2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기록 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	<u>25</u> · ·	<u>20</u> · ·	-5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97</u> · ·	<u>98</u> · ·	+1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u>38</u>	<u>40</u>	+2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27</u>	<u>29</u>	+2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6	37	+1
사무운영서기보	15	14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35	136	+1
전산주사	4	3	△1
행정주사 · 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50	149	△1
전산주사보	2	3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2	33	+1
사무운영서기보	13	12	△1